

<사전규격에 대한 협회 의견서>

1. 2021년 11월 23일 공개된 사전규격의 입찰참가자격 중 내진성능분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 제시의견

①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는 과업특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정밀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 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하여 시설물의 결함을 발견, 신속조치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과업입니다.
- 내진성능평가는 행정안전부 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지진대책법)』에 근거하여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종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1회, 2종 및 기타시설물은 필요시 실시하는 과업입니다.

② 내진성능평가 시 현장조사는 정밀안전점검 과업에 해당됩니다

- 금번 공개된 과업에는 일반철도로서 1종시설물 외에도 많은 수의 2종 및 기타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내진성능평가 시 주요 현장조사 항목은 재료특성(강도, 철근배근간격)조사와 구조물 제원조사 입니다.
- 1종시설물의 최상위 점검은 정밀안전진단으로 정밀안전점검 수준에서 안전성 평가가 추가되며, 2종시설물의 최상위 점검은 정밀안전점검으로서 기본과업인 재료시험으로 강도, 철근배근간격조사가 수행되어 내진성능평가의 재료특성 조사와 동일한 항목입니다.

③ 내진상세평가에서 철도교와 도로교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정밀안전진단 시 안전성평가는 설계 당시의 설계개념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 설계기준상 철도교와 도로교는 활하중, 하중조합 등이 매우 상이하므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내진상세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한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에 따라서 대부분의 교량이 고정하중에 대한 지진력을 산정하는 동일한 절차로 평가가 이루어져 철도교와 도로교에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3. 따라서, 금번 입찰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조제1항제5호』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2호』에 의거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2가지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아 래 -

- ① 철도분야 정밀안전점검이상 및 철도 또는, 도로분야 내진성능평가 실적이 있는 업체
- ② 철도 또는, 도로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적이 있는 업체.
끝.